탄 원 서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관련 형사사건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6 부 귀중
사건번호	2026 고합 431
피고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공소사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탄원 취지	개별 공소사실의 엄격한 심리와 증명 부족 부분의 무죄 요청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저는 관저 이전 예산 전용과 관련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를 둘러싼 이상민 피고인의 재판에 대해, 엄정한 책임 규명과 한 사람의 정당한 방어권이 함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위법한 예산 집행이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하고, 반대 의견을 낸 공무원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사실 역시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의식이 곧바로 전직 장관 개인의 형사책임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개 공판 보도를 접한 시민으로서 이 탄원을 드립니다. 공소장과 전자결재문서, 인사기록 및 공판조서 원본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의혹도 확정된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권한으로 어떤 결정을 했으며, 그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생겼는지를 증거에 따라 끝까지 구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 전용 자체의 적법성과 장관 개인의 관여를 구분해 주십시오

특검의 공소장 보도에는 당초 관저 공사 예산과 업체가 제시한 견적 사이의 차액을 메우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약 20 억 9 천만 원이 부적절하게 전용되었고,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실무자의 반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피고인에게 보고가 이루어졌고 대통령실 요구를 존중하라는 지시 및 결재 회피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전용 업무가 통상적인 장관 결재 사항이 아니었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예산 전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다툽니다.

먼저 관저 공사의 소관 기관, 예산 목적과 전용 가능 범위, 실무자의 반대 문건이 어떠했는지를 당시 법령과 원본으로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피고인이 어느 시점에 무엇을 보고받았고 어떤 지시나 대응을 했는지, 그 행위로 담당 공무원의 법률상 직무나 기관의 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 주십시오.

2. 직권남용의 권한과 결과를 나누어 판단해 주십시오

형법 제 123 조는 공무원의 직위가 높거나 행정적 판단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권 행사와 남용, 의무 없는 일 또는 구체적 권리행사 방해라는 결과, 인과관계를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도 2236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도 담당 공무원별 원래의 법령상 직무와 실제 하게 된 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동시에 보고를 받은 장관이 결재권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감독·지휘 또는 인사에 관한 실제 권한 행사까지 언제나 배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권한의 존재와 행사의 실질을 모두 살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피고인 개인의 책임을 정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3. 장관의 결재권과 2022 년 당시 위임전결규정을 정확히 대조해 주십시오

2026 년 8 월 24 일 공판 보도에는 관련 예산 담당 공무원이 장관의 최초 지시가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실무진이 위법성을 우려해 장관이 반대해 주기를 기대하며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소개됐습니다. 하나는 최초 지시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보고 이후 인식과 대응을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서로 모순된 진술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각 시점의 의미를 구별해야 합니다.

2022 년 당시 위임전결규정, 본부장 결재 기준, 실제 결재선, 사전 보고서와 구두 보고의 경위를 대조해 주십시오. 본래 장관 결재가 불필요했다면 단순한 결재 부재만으로 은폐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반대로 결재권 유무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위법한 집행을 알면서 강행하게 한 구체적 지시가 있다면 그 내용과 효과를 따져야 합니다.

4. 실무자 반대 보고와 예산 전용 승인 경위를 별도로 살펴 주십시오

실무진이 예산의 적법성이나 감사·국회 지적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는 보도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불리한 자료입니다. 그 보고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져 누구에게 도달했는지, 피고인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대응을 위해 어떠한 협의를 요청했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심사를 요청하라는 지시가 독립적인 검토를 위한 협의였는지 , 이미 정한 결론을 승인하도록 하라는 압박이었는지는 문맥과 사후 조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의 승인 자체가 위법성을 모두 치유하지는 않지만, 그 승인 경위와 독립된 판단이 있었는지는 인과관계 심리에 중요합니다.

5. 결재 상신 금지 주장의 표현·시점·효과를 구분해 주십시오

특검은 피고인이 예산 전용 방안을 승인하면서 장관 자신에게 결재를 상신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이 의혹이 실제라면 단순히 행정의 편의를 위한 전결 안내인지, 위법한 전용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은폐 지시인지가 쟁점입니다.

그 발언의 원문, 수신자, 발언 당시 존재하던 결재 의무, 발언 이후 문서 처리의 변화, 실제 담당자가 하게 된 구체적 행위를 각각 확인해 주십시오. 같은 표현이라도 적법한 전결 처리에 관한 안내와 불법한 절차 회피 지시는 법적 의미가 현저히 다르며, 양쪽 가능성을 가르는 것은 추측이 아니라 증거일 것입니다.

6. 보복성 인사 의혹은 승진 심사와 전보를 각각 판단해 주십시오

공소장 보도에는 예산 전용에 우려를 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직원을 승진 후보에서 제외하고 멀리 전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보복으로 입증된다면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보아야 합니다.

다만 승진 후보 추천·심사·최종 결정과 전보 발령은 권한과 절차가 다릅니다. 인사 관련 원본 기록, 평정 자료, 후보군, 실제 발령의 사유와 지시자의 관여, 인사 담당자의 법령상 의무를 대조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따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 당시 법령의 전용 금지 사유도 엄격히 검토해 주십시오

문제 된 집행 시점에 시행되던 국가재정법 제 45 조와 제 46 조는 예산 목적 외 사용의 금지와 전용의 승인 요건·제한을 규정합니다. 예산이 당초 계획한 사업의 목적 범위 안에서 움직였는지, 예산 전용을 통해 실제로 새 사업을 추진했는지, 국회 의결 취지를 벗어났는지에 관한 판단은 승인 서류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필요합니다.

저는 법령 위반 자체를 축소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인 개인에게 그 전용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상대방의 직무행사를 침해할 고의가 있었는지까지는 증거로 연결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8. 유리한 증언과 불리한 증거를 시간 순서로 함께 심리해 주십시오

초기 사업 필요성을 인지한 시점, 실무진 반대 보고, 대통령실과의 협의, 2022 년 7 월 무렵의 장관 보고, 기획재정부 승인, 예산 집행, 인사 조치를 시간 순서로 연결해 주십시오. 최초 지시가 없었다는 진술은 초기 주도성의 문제이고, 사후에 보고를 받고도 위법한 처리를 밀어붙였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공동피고인들이 한 강한 표현이나 연락도 피고인에게 자동 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 실제로 보고를 받거나 의사연락을 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경위와 범위를 확인하고, 묵시적 공모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능적 역할에 맞는 책임을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2026 년 10 월 16 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피고인에게 징역 3 년 6 개월을 구형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검사의 구형과 유죄의 증명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 307 조의 취지에 따라 각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장관이었다는 지위만으로 구성요건을 대신하지 않고 , 실제 지시와 고의, 상대방에게 발생한 구체적 결과 및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는 무죄의 원칙을 적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달리 유죄가 인정된다면 행위별 책임의 경중과 결과를 균형 있게 평가해 주십시오. 실무자의 문제 제기를 존중하는 일과 피고인의 책임을 엄격히 입증하는 일은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실무자의 권리와 피고인의 권리를 함께 지켜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부께. 법을 지키려는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 앞에서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바랍니다 . 동시에 어느 누구라도 직위나 여론만으로 유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회이기를 바랍니다. 두 원칙은 서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안에서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이상민 피고인이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고 어떤 직권을 행사했는지, 그 결과가 실제로 누구에게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기록에 따라 면밀히 밝혀 주십시오. 혐의의 입증이 부족한 부분에는 무죄를, 증명된 책임에는 그 정도에 맞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탄원드립니다.

2026 년 _____월 _____일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선택) _____

주소 _____

연락처(선택) _____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6 부 귀중